제2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재정경제부)	1.고시 적용시한 연장(강화) ㅇ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반출량 최저한도 설정 – '26년 월별 반출량은 유종별로 전년 동일기간 대비 90% 하회 금지 –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금지 ㅇ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판매기피 제한 –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·보유 금지 –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하는 행위 금지 ㅇ 반출물량 보고 –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 권한 규정 – 위반행위를 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 장관의 시정명령 등 관련 조치 의무화	규제 심사 완료
2	촉매제(요소수)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재정경제부)	1.고시 적용시한 연장(강화) ㅇ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 금지 – 폭리 목적으로 대상 물품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 금지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매점매석 판단기준 – (기존사업자) '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%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– ('25년 신규사업자)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%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– ('26년 신규사업자·영세사업자) 수입 · 제조 ·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	
3	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재정경제부)	1.고시 적용시한 연장(강화) ㅇ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 금지 – 폭리 목적으로 대상물품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 기피 금지 ㅇ 매점매석 판단기준 – ('24년 이전 기존사업자) '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%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– ('25년 신규사업자)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%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– ('26년 신규사업자)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ㅇ 판매 또는 반출 물량 보고 – 사업자에 대한 식약처장의 제조 · 판매 등 관련 자료제출 명령 권한 규정	규제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사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확인 시 식약처장의 시정명령 및 벌칙 등 관련 조치 의무화	
4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부양가족 요건 명확화 및 제출서류 추가 (강화) ○ 부양가족 가점 인정 요건으로 청약인 혹은 그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이 실거주를 같이할 것을 명확화 ○ 부양가족 가점 혹은 특별공급을 인정 받은 청약인이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추가 2.부양가족(30세 이상 직계비속) 가점요건 강화(강화) ○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부양가족 가점 대상으로 인정 받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	본심사 상정
5	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(조달청)	1.부정한 행위에 따른 환수금 산정기준(강화) ○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비율* 개정 * ▲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의 서류 제출 : 물품대금×25% ▲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위반 : 물품대금×20% (일부 위반 15%) ▲ 원산지 거짓 표시 : 물품대금×20% ▲ 계약 규격과 상이한 납품 : 물품대금×10%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일반오염시설의 정화이행기간 산정(신설) ㅇ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명령을 받은 일반오염시설의 설치·관리자에 대한 정화이행기간* 부여 * (최초) 2년 이내, (연장) 필요성 인정 시 매년 1년이내 연장 가능 2.일반오염시설의 정화명령 시 제출서류 규정(신설) ㅇ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명령을 받은 일반오염시설의 설치 관리자에 대한 지하수오염평가서 제출 의무 및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수립·제출 의무 부과	규제 심사 완료
7	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(해양경찰청)	1.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대상선박의 최고높이 신고 기준(강화) ㅇ (관제구역 확대)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국가에 신고 의무가 있는 관제구역을 기존 동해·포항항 인근 해역에서 양양-동해-울진(동해광역), 영덕-포항-경주(포항광역) 해역까지 확대 ㅇ (선박높이 신고) 청라하늘대교 및 실리도-원전항 해월송전선(수정 배전선로)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높이가 해경청장이 고시한 높이*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자선의 높이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* ▲ 청라하늘대교 : 높이 37미터 이상 선박 ▲ 수정 배전선로 : 높이 25미터 이상 선박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(신설) ㅇ 조합이 선임하여야 하는 준법 감시인의 자격 요건* * ▲지역 농·축협, 농협중앙회,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▲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등 ㅇ 준법감시인의 결격 사유* * ▲최근 5년간 금융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주의·경고 이상을 받은 경우 ▲외국인, 미성년자 등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* * ▲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것 ▲자산운용업무, 조합의 신용 경제사업 및 그 부대 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을 것 2.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(신설) ㅇ 조합 회계감사 수감기간* 주기 단축 * ▲자산총액 500억원 ~ 3,000억원 : 4년 → 2년 ▲자산총액 3,000억원 초과 : 4년 → 1년 ㅇ 외부 회계감사인 지정* 대상 조합 : 자산총액 1조원 이상 * 4년간 조합이 회계감사인을 자체 선정하는 경우, 그 후 2년간 농식품부가 회계감사인 지정 가능	규제 심사 완료